평택시 공고 제2021- 567호

2021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공고

우리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17일

평 택 시 장

-1

Ⅰ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2. 사 업 량 : **승용·초소형 200대(우선보급 20대, 법인·기관 80대, 일반보급 100대)**

화물 200대(우선보급 20대, *별도배정 20대, 일반보급 160대)

*별도배정 : 중소기업 생산차로 별도배정(현대·기아 제외 모든 차종)

[화물 "2020년 사업 대상자선정 탈락자" 일반보급 내에서 우선 선정]

→ 재신청자들에게 2월26일까지 한시적 적용

*우선보급 및 별도배정(3분기(2021. 9. 30)까지 이후 일반보급으로 전환)

- ①순위.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 (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 ②순위. 취약계층 , 다자녀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③순위.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3. 신청기간 : 2021. 2. 19.(금)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4. 지원금액

▷ 승용 : 최대 1,300만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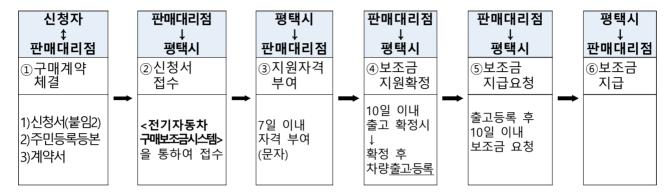
▷화물 : 초소형 900만원, 경형 1,700만원, 소형 일반 2,500만원, 특장 3,000만원

- ※ 전기택시는 최대 국고보조금 200만원 추가 지원(택시사업자면허 제출 필요)
-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전기승용)
- ※ 5등급 경유차 전환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 등 경기도청에서 200만원 추가지원(전기승용) [붙임5 참조]

5.신청방법

-신청인(구매자) -> 판매대리점에게 상담 후 구비서류를 대리점에 제출 ※구입문의 : 판매대리점에서 일괄 접수

대리점은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시스템(http://www.ev.or.kr/ps/main)을 통해 진행



※ 대상자 선정 : **자동차 출고 · 등록순**

※보조금시스템 진행 단계(요약)

1단계 - 구매지원 신청(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2단계(자격부여단계) - 서류 검토 후 자격부여(보조금 지원 확정단계 아님) - 1차 문자발송

3단계 - 10일 이내 출고가 확정 되면 **지원가능확인요청 (10일 이내 출고가 안 될 시 취소 또는 후순위)**

4단계(대상자선정단계) - 예산 및 서류 상 문제가 없을 시 대상자 선정 - 2차 문자발송

5단계 -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Ⅱ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신청일 이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예) 2021년 3월2일 전입자는 6월3일부터 신청가능
 - ① 평택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주민등록등본 상 평택시 거주기간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

- ② 평택시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록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 1세대 당 1대, 개인 사업장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장으로 이중신청 할수 없음.
 - ※ 전기택시의 경우 택시사업자면허 제출

- 2. 신청자격(필수조건)
 -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 · 판매사와 차량 구매 계약 체결
 -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 ③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차량만 신청 가능
 - ※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구매보조금 선정취소
 - ④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평택시 주소로 등록
 -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평택시'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⑤ 전기차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 동의서명
-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 3.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 ※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평택시에서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 가능

||| [판매대리점]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 1. 신청기간 : 2021. 2. 19.(금)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2. 신청방법
- ①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② 판매사에서는 전기자동차 출고가 2개월 이내에 가능할 경우, 상기 신청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http://www.ev.or.kr/ps/main)를 이용하여 접수

- 3. 신청서류
 - ▶ (개인) 주민등록등본, 전기차구매신청서(붙임1),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 ▶ (공공기관,법인,기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차구매신청서(붙임1)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 ▶ (우선순위 신청자) 해당 증빙서류제출

대 상 자	증 빙 서 류
o 기초생활수급자 o 차상위계층	o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o 차상위증명서 1부
o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o 장애인 o 다자녀가구	o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1부 o 장애인등록증 1부 o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택시	ㅇ 택시 사업자 면허증 1부.
ㅇ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o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보조금 신청시 경유차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o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 1부.

Ⅳ [평택시] 대상자 선정 및 [판매대리점] 지원확정

- 1.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 등록 순
- 2. 대상자 선정 알림 : 신청서 접수(사이트) 후 7일 이내
 - ① 접수된 순서로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 시 구매자 및 전기차 제조·판매사에게 **7일 이내** 자격 부여 및 안내(문자 통보)
 -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신청자에게 자격부여 여부 재차 안내
 -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되어야 함
 - ②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는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지원가능확 인 요청(10일 이내 출고가 안 될 시 취소 또는 후순위)
 - ③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지원 확정 후, 차량 출고 및 등록

∨ 보조금 지급

- 1. 보조금 지급 신청(판매대리점) : 차량 출고 후 10일 이내 신청
- 2.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보조금지급청구서[붙임2], 청렴서약서[붙임3], 자동차등록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제작·판매사), 사업자등록증(제작·판매사)
- 3. 보조금 지급(평택시)
 - : 서류 확인 후, 전기차 제작 판매사로 보조금 지급
- ※ 보조금 지원시스템 신청 후 서류 일체를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원본 제출
 - 제출처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환경정책과 미세먼지대책팀
 - 제출서류: 구매지원신청서[붙임1], 동의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보조금지급청구서[붙임2], 청렴서약서[붙임3], 자동차등록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제작・판매사), 사업자등록증(제작・판매사)

VI 유의사항

- ①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u>2개월 이내</u>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됨
- ②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③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④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u>2년간</u>의 의무 유행기가 준수
 -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수출 등은 불가함(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평택시 사전 승인 필요
- ⑤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계약을 취소할 시 평택시에 통보하여야 함.
- ⑥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처리지침(환경부)」 및 평택시 결정에 따름
- ⑦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평택시의 사전승인 필요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⑨ 업무별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평택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문의 등	031-8024-5000 031-8024-3756

붙임1 구매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출고 예정일자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평택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 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 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 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3 항에 따라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에는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음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 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

붙임2 보조금지급 신청서(출고후 10일이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작사명 (판매사)		대표자	
신청인 (제작사)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소재지)			
	성 명 (법인명)			
구매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락처	
전 기 차	차종 및	차량번호	수량(대)	차량가격(원)
구매내역 				
사 업 명		2021년 전기자동	등차 구매지원 사업]
	은행명		예금주	
보 조 금 입금계좌	계좌번호			
	청구금액		(=	원)
2021년	평택시 전기자	동차 보급사업고	· 관련하여 전기	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	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자 (전기차 제	∥조·판매사)	(인)
│ │ 평택시장 ラ	귀하			
	차량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2021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평택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 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 으며, 평택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평택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 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 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업체 대표 (서명)

업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업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4 전기차 구매지원금

□ 승용(참고용)

구분	제조ㆍ 수입사	차 종	국고 보조금 (만원	시 보조금 (만원)	보조금 총액 (만원)
		코나(기본형, PTC, 모던)	800	500	1,300
		코나(기본형, PTC, 프리미엄)	800	500	1,300
		코나(기본형, HP, 모던)	800	500	1,300
		코나(기본형, HP, 프리미엄)	800	500	1,300
	취미	코나(경제형, PTC, 모던)	690	431	1,121
	현대	코나(경제형, PTC, 프리미엄)	690	431	1,121
		코나(경제형, HP, 모던)	690	431	1,121
		코나(경제형, HP, 프리미엄)	690	431	1,121
		아이오닉(HP)	733	458	1,191
		아이오닉(PTC)	701	438	1,139
		니로(HP, 프레스티지)	800	500	1,300
		니로(HP, 노블레스)	800	500	1,300
승용		니로(PTC, 프레스티지)	780	487	1,267
		니로(PTC, 노블레스)	780	487	1,267
	7101	니로EV(경제형, 프레스티지)	717	448	1,165
	기아	니로EV(경제형, 노블리스)	717	448	1,165
		쏘울 (기본형, 프레스티지)	750	468	1,218
		쏘울 (기본형, 노블레스)	750	468	1,218
		쏘울 (도심형, 프레스티지)	688	430	1,118
		쏘울 (도심형, 노블레스)	688	430	1,118
		ZOE ZEN	702	438	1,140
	르노삼성	ZOE INTENS ECO	702	438	1,140
		ZOE ITENS	702	438	1,140
	D / // /	i3 120Ah Lux	673	420	1,093
	BMW	i3 120Ah SoL+	673	420	1,093
	517014	볼트EV LT	760	475	1,235
승용	한국GM	볼트EV Primier	760	475	1,235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국고 보조금 (만원	시 보조금 (만원)	보조금 총액 (만원)
		Peugeot e-208 Allure	649	405	1,054
		Peugeot e-208 GT Line	649	405	1,054
	한불	DS3 E-tense So Chic	605	378	983
	단절 모터스	DS3 E-tense Grand Chic	605	378	983
	·	Peugeot e-2008 SUV Allure	605	378	983
		Peugeot e-2008 SUV GT Line	605	378	983
		Model S(Long Range)	미지원		
		Model S(Performance)	미지원		
	테슬라	Model 3(SRP RWD)	684	427	1,111
		Model 3(Long Range)	341	213	554
		Model 3(Performance)	329	205	534
	│ 재규어	I-PACE EV400 SE	미지원		
	7417131	I-PACE EV400 HSE	미지원		
		EQC 400 4M	미지원		
	шт	EQC 400 4MATIC(1886)	미지원		
	벤츠 코리아	EQC 400 4MATIC Premium	미지원		
	700	EQC 400 4MATIC	미지원		
		EQC 400 4MATIC AMG Line	미지원		
	아우디	e-tron 55 quattro	미지원		
	쎄미시스코	SMART EV Z	639	399	1,038
	□	TWIZY	400	250	650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K1J05-1Z)	400	250	650
		DANIGO	400	250	650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400	250	650
	캠시스	CEVO-C	400	250	650
		CEVO-C SE 앤버걸 차량으 화겨부 저기?	400	250	650

※ 향후 추가 및 금액변경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 화물(참고용)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국고 보조금 (만원	시 보조금 (만원)	보조금 총액 (만원)
		쎄미시스코	D2C		300	900
		U카미디人	다니고3			
		대창모터스	다니고3 픽업	600		
	초소형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포트로			
		디피코	포트로-탑			
화물			포트로-픽업			
1 2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100	600	1,700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 000	900	2,500
	ᆺᅯ	파워프라자	봉고3 ev PEACE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1,600		
		기아자동차	봉고Ⅲ 전기차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 전기냉동탑차	2,100	900	3,000

[※] 향후 추가 및 금액변경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